

한진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제정 2019년 3월 14일



1.1 목적

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, 기능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2 적용범위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,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1.3 권한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과 경력 및 역할 수행 정도를 판단하여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.

1.4 구성

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(이하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
1.5 위원장

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1.6 소집권자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소집한다.

1.7 소집절차

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소집목적에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회의 1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①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.

1.8 부의사항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1.9 결의방법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1.10 관계인의 의견청취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1.11 간사

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한다.

1.12 의사록

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1.13 통지의무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1.14 규정의 개폐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[부칙]

- 1. 이 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은 2020년 2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